

MAI體制下의 效率的인 FDI戰略*

The Effective FDI Strategies under the MAI System

채점길*

목 차

- | | |
|---------------|--------------------------|
| I. 序 論 | IV. MAI 體制下의 效率的인 FDI 戰略 |
| II. MAI의 主要內容 | V. 結 論 |
| III. MAI의 效果 | |

Key Words: MAI, FDI, 다자간투자규범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some problem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seeks for the ways of activa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hereafter F.D.I.) by analyzing the Korean economic structure that is faced with the neo-protectivism and nationalism of the advanced or foreign countries currently.

During a transformational process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world trade environment, it is necessary for Korea not only to learn the higher technology of advanced countries, but also to apply technology to their economic structure in order to enter into competition with the advanced countries.

Based on the experiences and accomplishments from their investments, Korean enterprises should turn their business into F.D.I. and act appropriately in order to keep the balance between indoor and outdoor investment. Looking through the ways to activate F.D.I., we may make conclusions as follows:

1. Government policy transparency
2. Prudential Macro Economic policy
3. International policy cooperation system
4. Solidification of Foreign Commercial intercourse to Developing countries
5. Globalization base of domestic cooperation
6. High efficiency - low cost of business cooperation enterprise
7. Attractive investment strategies on conclusive competitive advantage
8. Multilateral investment Area
9. New recognition on marketing investment etc. F.D.I. strategies

* 창원전문대학 무역과 교수

I. 序 論

1980년대 이후 경제의 자유화·개방화가 범세계적으로 진전되는 가운데 외국인투자 규모가 급증하고 그 형태도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투자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가 보호를 위한 국제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각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연평균 600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91년 1,580억 달러, 1995년 3,150억 달러(연간투자실행액 기준, 1996년에는 그 누적액이 2조 8,934억 달러)에 이르는 등 급속히 증가하면서 세계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처럼 활발한 국제투자는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략에 따른 것이면서 동시에 점점 심해지고 있는 기업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또한 세계 각국 정부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 정책을 통해 이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500여개의 쌍무협정, EEA, NAFTA, APEC등의 지역규범이나 WTO TRIMs·GATS¹⁾ 등의 국제규범이 있으나 이들은 포괄범위나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해외투자활동을 반영하기에는 불충분하다.

OECD의 양대 자유화 규범²⁾과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³⁾도 OECD 회원국만을 주대상으로 하는 데다 구속력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OECD 각료이사회는 국제투자에 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범을 정립하기 위하여 다자간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제정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협상그룹(NG)은 모든 회원국을 참가대상(WTO, IMF 등은 옵서버)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5개의 전문가그룹(Expert Group)을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그룹별 담당분야는 다음과 같다.

EG1 : 분쟁해결 및 지역별 범위	EG2 : 조세문제
EG3 : 특수의무조항	EG4 : 각종제도사항
EG5 : 금융부문	

1) TRMs는 WTO의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중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을 말하며 GATS는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하는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을 지칭함

2) 자유화 규범 : 1961년 12월 OECD이사회가 결정한 대표적인 규범으로서 국가간 서비스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및 「자본이동 자유화규범」을 말함

3) 가이드라인 : 주로 다국적기업이 영업활동 자유화를 보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된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으로서 1991년까지 세차례 개정된 바 있음. 이는 양대 자유화규범과 함께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보장하는 OECD 3대 규범으로 불리기도 함

한편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 11일 OECD로부터 공식가입 초청을 받게 됨에 따라 동년 10월 24~25일 개최된 제9차 협상그룹회의에 옵서버자격으로 처음 참여하였으며 12월 18~20일 개최된 제10차 협상그룹회의부터 정회원자격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해외직접투자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각국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시장접근에 대한 국제정책 논의의 장에서 재화와 서비스 무역관련 문제는 물론 해외직접투자 관련 사안들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게 되었다.

그동안 각국은 주로 양자간 투자협정을 통해 자국의 투자를 보호하고 자국에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는 등 자국이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간 투자협정을 비롯한 기존의 투자규범은 성격, 범위, 규율대상 등에 있어서 각국간 상당한 차이를 보여 통일된 국제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투자활동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수용하기에는 상당부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법에 따라 허용된 투자에 한해 적용되는 전통적인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의 규율범위를 넘어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다자간 차원에서 투자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000여개에 달하는 투자관련 규범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자성, 포괄성, 구속성을 모두 갖춘 투자규범은 없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그 내용이 포괄적이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국제투자협정의 존재가 강력히 요구되게 되었다.

기존 투자규범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WTO 규범은 무역과 관련된 투자만 규정하고 있어 다자성, 구속성은 인정되나 포괄성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OECD의 양대자유화 규약과 내국민 특혜 규약은 그 대상국가가 회원국으로 제한되어 있고 분쟁해결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구속성 및 포괄성에 한계가 있다. 한편 NAFTA 및 APEC은 지역적 성격이 강하여 다자성에 한계가 있으며 APEC은 비구속적 규범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 바탕 위에 미국 등 선진국들은 각국의 투자정책과 규정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존투자규범(양자간, 지역별, 복수국간 등)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자국기업들이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현지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명실상부한 다자간 투자규범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타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수출은행 및 한국은행 자료와 기존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MAI체제하의 효율적인 FDI전략의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국제경영마인드의 변화요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주장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정부측면에서와 기업측면에서의 전략을 분리하여 국제투자규범을 이해하고 우리기업의 FDI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시하고 검토하였다.

II. MAI의 主要內容

MAI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업은 물론 주식, 채권에서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무형의 자산에 대한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즉, 다자간투자협정 (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투자의 자유화와 투자가 보호를 위하여 현재 다자간에 추진중에 있는 새로운 국제투자 규범이다.

1995년 6월 OECD 각료이사회는 CIME/CMIT의 보고서에서 1997년 5월 각료회의에서의 타결을 목표로 넓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투자보호,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를 가진 다자간투자협정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 MAI)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9월 OECD 회원국간 실무협상그룹이 구성되어 6주마다 회의를 개최하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1997년 3월까지 총 13차에 걸쳐 실무 회의가 열렸으며 1996년 5월 각료이사회에 그 중간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협상그룹에는 현재 29개 OECD회원국과 EU가 참가하고 있으며 WTO가 옵저버로서 협상그룹 및 전문가그룹의 기술적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ICSID)도 옵저버로서 기초위원회(drafting) 및 전문가 그룹에 참가하고 있다.

한편, 동 협상은 협상내용의 약화와 시간의 지연을 우려하여 회원국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 직후 직접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데, 1997년 4월 3, 4 일 이틀간 서울에서 프랑스 엔거링 MAI 협상그룹의장을 비롯한 OECD주요회원국의 협상대표들이 참석해 협상내용을 아시아 비회원국들에게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OECD MAI에 관한 심포지엄이 개최된 바 있다.

1. 基本 理念

MAI는 기본적으로 OECD의 시장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OECD의 시장이념은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재화, 용역, 투자, 기업, 등에 제한없는 시장접근을 허용하며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즉 시장이 정부나 민간과 같은 경제주체의 반경쟁적 관행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국제적으로 경합적인 시장(Contestable Market)을 실현코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은 투자의 자유화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기업은 시장주재(market presence)와 시장접근(market access)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경합시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에 대한 기존의 규범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데, MAI에서 논의된 구체적 방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구속력 있는 내국민 대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전 뿐만 아니라 설립 후 단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의 투자제한을 대폭 완화 내지 철폐하고 유보사항(reservation)은 확고한 시한을 설정하여 철폐해 나가야 하며 이행의무, 기업의 관행, 투자인센티브 등 기존의 규범이 다루지 않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최소한 OECD 회원국들이 체결하고 있는 기존의 BIT(양자간 투자협정) 수준 이상으로 해외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EU, NAFTA 등 지역경제통합기구에서 역내 국가간에 특혜대우의 범위를 축소, 제거하여야 한다.

2. 主要 協商 内容

1) 일반적 내용

MAI는 기존의 국제투자규범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외직접투자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국제규범을 도출하기 위하여 ① 투자보호, ② 투자자유화, ③ 분쟁해결 등 3대 분야에 관한 최선의 기준설정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높은 수준의 투자보호 ②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동결(Standstill)⁴⁾, 철폐(Roll-back)⁵⁾, 최혜국특혜(Most Favored Nation : MFN), 투명성 원칙(Transparency) 등이 담긴 투자자유화 확대 ③법적 구속력의 확보 및 규범집행을 위한 규정 마련 ④모든 MAI 당사자에게 차등없이 적용 ⑤중재 및 효과적 분쟁해결 절차 방안 등이다.

가. 광범위한 투자의 정의

MAI에서는 투자를 기존의 해외직접투자인 기업이 설립에다가, 주식, 증권, 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 차관, 신용, 예금 등 각종 청구권, 지적소유권, 부동산 매매 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어떠한 투자규범보다도 포괄범위가 넓다.

나.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 4) 동결 : MAI협정의 자유화 및 투자대우 의무와 부합되지 않는 기존의 조치 및 관행에 대해서 현상유지(state quo)를 허용하되, 새로운 제한조치는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5) 철폐 : MAI와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 관행 및 자유화 유보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철폐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MAI는 가입국의 투자가 및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구속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설립후단계 뿐만 아니라 투자실행단계의 자유화의 보장도 요구하고 있어 투자후단계의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양자간 투자협정 보다 보호범위가 넓으며 행정지도나 시장관행에 의한 유·무형의 차별도 철폐하였다.

다. 기존 OECD 투자규범 보다 높은 보호수준

MAI는 기존 OECD 투자규범인 자본이동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의 거래자유화규약 및 내국민대우 규정을 통합하고 이를 넘어서 추가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투자자유화 및 보호수준이 높다.

외국인 투자자산의 국유화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의무를 부과한다.

라. 투명성(Transparency) 제고

가입국들은 협정에 영향을 미칠 법률, 제도, 절차, 행정결과, 사법판결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를 의무화 했다.

마.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 부과 금지

투자대상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생산물의 일정비율 수출의무, 국산품 사용의무, 기술이전 의무 또는 내국인 고용의무비율 등 영업과 관련한 각종 제한 부과금지를 정했다.

바. 독점의 규제

정부지정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인정된 독점 공급기관은 영업 활동상 외국인 투자가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사. 강력한 분쟁 처리 절차 마련

WTO가 규정하는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뿐만 아니라 개별투자가가 직접 국가를 대상으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등 강력한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했다.

2) 금융분야의 특별조항

가.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 예금자, 투자가 및 보험가입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감독적 규제조치는 인정된다. 단, 동 조치가 가입국의 의무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구체적 조치가 MAI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결정된다.

다자간 투자규범(MAI)의 주요내용

구 分		주 요 내 용
투 자 정 의	적용투자 범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에 의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되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 · 기업법인, 조합, 개인기업, 지점, 합작회사 등 · 주식 등 기업지분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 텐키건설, 수익공유계약 등 각종 계약상의 권리 · 현금 및 이행청구권 · 지적 재산권 · 임대권, 저당권, 유치권, 담보권 등 유형·무형의 각종 자산 - BOP, 거시경제안정 등을 이유로 예외규정 도입 논의중
	일 반 적 대 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체약국은 투자에 대해 공평하고 완전한 보호를 부여함을 원칙
	수용(收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목적을 위해 비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만 허용 - 적법절차에 의해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 보장
투 자 보 호	분쟁으로 부터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가가 투자유치국의 전쟁, 무력충돌 등 긴급상황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보호 - 원칙적으로 투자유치국은 보상의무가 없으나, 보상을 하는 경우 내국인·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용 - 예외적으로 i) 투자유치국 정부군이 투자자의 재산을 징발한 경우 ii) 불필요하게 투자유치국 정부군에 의해 투자자의 재산이 파괴된 경우
	자본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와 관련한 모든 자본이동은 지체없이 당일의 시장환율로 자유롭게 거래 - 예외적으로 BOP, 거시경제안정 등의 이유로 예외규정 (safeguard) 도입 논의 중
투자자 및 투자의 대우	기본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대우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기본으로 함 · 투자전과 투자후 단계 모두 적용 · 법률 혹은 사실상 차별 금지
	핵심인력 이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와 관련된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 체류, 노동을 허가해야 하며 인원 제한이나 경제적 심사는 불가 - 핵심인력에는 임원, 관리자, 전문가가 포함 - 체약국은 핵심인력의 배우자·자녀에 대하여도 입국·체류를 허용해야 하며, 특히 배우자의 취업허가를 위해 노력

구 분	주 요 내 용		
이행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약국으로 하여금 투자와 관련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지 못함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행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율의 재화·서비스의 수출 · 일정율의 국내부품사용 · 자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서비스의 구매·사용 · 수출액 및 외화획득 금액에 따른 수립연계와 국내 판매 허용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반대 급부와 함께 허용되는 이행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의 의무 · 자국내 본점설립의무 · 생산되는 재화·용역의 특정지역(국가)에의 공급 · 자국내 일정율의 생산·투자·판매, R&D 수행 · 일정수준의 국내인 고용 · 합작법인 설립 · 일정수준의 내국인 지분 유지 		
투자자 및 투자의 대 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투자 인센티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MAI에 이상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의중 - 조세전무가 그룹은 투자인센티브 정의에서 조세유인율을 제외 </td> </tr> </table>	투자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MAI에 이상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의중 - 조세전무가 그룹은 투자인센티브 정의에서 조세유인율을 제외
투자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MAI에 이상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의중 - 조세전무가 그룹은 투자인센티브 정의에서 조세유인율을 제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민영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체약국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나, 민영화시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기업에 대해 차별금지 - 소규모기업 민영화의 경우 제한적 적용 </td> </tr> </table>	민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체약국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나, 민영화시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기업에 대해 차별금지 - 소규모기업 민영화의 경우 제한적 적용 	
민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체약국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나, 민영화시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기업에 대해 차별금지 - 소규모기업 민영화의 경우 제한적 적용 		
독점 및 국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설정 및 해제권한은 체약국의 주권적인 권리로 인정되나, 정부에 의해 지정된 독점 및 국영기업은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하여 비차별적 대우를 원칙 - 독점기업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기업의 MAI 의무 회피 금지 · 독점생산 재화 및 용역의 비차별적 판매금지 · 독점적으로 구입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차별적 구매금지 - 독점해제시 새로운 유보 가능 여부 및 독점에 대한 기업대 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 배제문제 등은 논의 - 국영기업에 대한 독점기업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 <p>논의 중</p>		

구 분		주 요 내 용
분 쟁 해 결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협의 중재 및 중재재판의 단계적 절차를 규정 · 기본적으로 WTO 분쟁 처리절차와 유사 - 중재법원이 최종판정에 포함할 수 있는 구제수단 · 체약국 조치가 MAI위무에 위반된다는 선언 · 금전배상 · 원상회복을 포함한 구제수단 - 중재재판 불이행에 따른 보복수단 · 국제법상 인정되는 모든 보복조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복 조치가 MAI의 권리제한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논의중
	기업 대 기업간 분쟁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 및 제소자격 · MAI 위반 행위와 기업의 손해간에 인과관계 존재 · 기업과 체약국간 별도의 계약 등에의한 체약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MAI에 의한 투자자의 분쟁 제소범위에 포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중 - 체약국이 동의 · 체약국이 기업의 국제적 중재제소에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논의중 - 중재법원이 최종판정 할 수 있는 구제수단 · MAI 의무위반 선언 · 금전배상(이자상당액 포함) · 원상회복 및 기타의 구제조치 - 체약국이 최종판정 불이행시 기업의 본국이 국가 대 국가 분쟁절차에 의해 제소 가능
	금 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에 의한 체약국내로의 서비스 공급에 대해서는 MAI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 - 금융에 있어서 건전성 조치, 금융당국의 금융 및 외환 정책과 관련한 거래는 MAI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제수지 방어 및 급격한 자본이동에 따라 필요한 세이프가드 조항 및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에 있어 금융분야에 대한 특별조항 신설문제는 논의중
	기 타 쟁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당국의 과세권과 투자자의 권리 사이 균형유지 - 기존 양자 혹은 복수간 조세 협정을 고려, 예측가능성 보장
	조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 환경보호와 투자확대간에는 내재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노동기준 준수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MAI에 포함 - 이와 관련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투자요치를 위한 노동 및 환경기준 약화 금지조항의 도입 ii)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과 MAI와의 연계문제 iii) MAI 전문에 노동 · 환경 관련조항을 두는 문제등이 논의중
	노동 및 환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 환경보호와 투자확대간에는 내재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노동기준 준수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MAI에 포함 - 이와 관련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투자요치를 위한 노동 및 환경기준 약화 금지조항의 도입 ii)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과 MAI와의 연계문제 iii) MAI 전문에 노동 · 환경 관련조항을 두는 문제등이 논의중

MAI와 여타 국제규범과의 비교

	OECD규범	WTO협정	MAI
대상국	29개 회원국	130개국	OECD회원국 등 가입 희망국
발효일	96. 12. 12(우리나라)	95. 1. 1	99예정
적용대상	무역, 금융, 투자 등	무역,금융,투자,지적재산권 등	투자
주요내용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사업활동, 무역, 운송, 보험, 은행 및 금융서비스, 자본소득 등 11개 분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직접투자 및 회수, 부동산 거래, 무역 및 용역제공 관련신용, 개인적 자본이동 등 16개 분야	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농산물, 섬유, 관세, 반덤핑 등 12개 협정)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지적재산권협정 분쟁 해결절차(국가대 국가) 무역정책검토제도 등	투자의 정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대우 투자보호 분쟁해결절차(국가 대 국가, 투자가 대 국가) 금융서비스 관련조항 등
우리나라 와의관계	우리나라는 96년 OECD가입시 자본이동 자유화 관련 38개 항목,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관련 10개 항목 유보	우리나라 금융서비스 협상 양허표의 주요내용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10%→15%) -금융서비스업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향후의 자유화조치에 관한 초혜국대우 면제 조항 삭제 -은행지점 설치시 사무소 전 치주의 폐지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8%)폐지 등	96년 10월 OECD가입초청과 동시에 협상그룹에 참여
기타		WTO체제는 95년 1월 미 완결 형태로 발족되어 출범이후에도 협상진행 중 (74건)	98년 5월 말 이전협상 타결완료 국내법 절차 걸쳐 99년 시행예정

협정문(안)의 구성

<p>I. 일반규정</p> <p>II. 범위와 적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의 2. 적용의 지정학적 범위 3. 해외지역에 대한 적용 <p>III.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대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2. 투명성 3. 특수의무조항 (1) 투자가 및 핵심인력의 입시입국 체류 및 취업 (2) 최고경영자 (3) 고용요건 (4) 이행요건 (5) 민영화 (6) 독점 및 민영기업 (7) 투자인센티브 (8) 기업관행 (9) 기술 R&D (10) 지적재산권 (11) 공공부채 (12) 기준약화금지 	<p>IV. 투자보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대우 2. 강제몰수 및 보상 3. 폭동 등으로부터의 보호 4. 해외이전 5. 손해배상 6. 기존투자보호 <p>V. 분쟁해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간 분쟁해결 (1) 일반규정 (2) 협의, 화해 및 중재 (3) 조정 <p>VI. 예외 및 일시적 긴급제한 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적 예외 2. 통화 및 환율정책과 관련된 거래 3. 일시적 긴급제한 조치 <p>VII. 금융서비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전성 규제 2. 상호 인정 3. 인가절차 	<p>4. 투명성</p> <p>5. 정보이전 및 처리</p> <p>6. 자율규제기구에의 가입</p> <p>7. 지급결제제도 및 초종 부자기능</p> <p>8. 분쟁해결</p> <p>9. 금융서비스의 정의</p> <p>VIII. 조세</p> <p>IX. 유보</p> <p>X. 다른국제규약과의 관계</p> <p>XI. 실행과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비국 2. 협정사무국 <p>XII. 종결조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명 2. 비준 및 효력발행 3. 가입 및 탈퇴 4. 적용배제 5. 혜택거부 등
--	--	---

나. 일시적 긴급제한조치(Temporary Safeguards)

국제수지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시적 제약이 허용한다. 단, 발동시기가 국제수지 위기상황에 한정된다는 점. 위기상황의 존재여부 평가는 MAI 전문가 패널에 의해 결정되며 제한조치 자체가 분쟁해결절차에 귀속되는 등 발동조건과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다. 중앙은행의 통화, 외환정책 관리

중앙은행이 통화, 환율정책 목적으로 취하는 조치는 정부의 고유권한 행사로 협정적용의 예외로 인정(carry out)한다. 단, 중앙은행이 취하는 모든 조치가 아니라 공개시장 조작과 같이 MAI제정으로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거래행위에 한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

다.

라. 자율규제단체(Self-Regulatory Organizations)에의 가입허용여부
증권거래소, 금융결제원 등 해당단체에서 가입이 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요하거나 가
입기관에 대해 정부가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동 단체의 가입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
여한다.

3) 협정문(안)의 구성

다자간투자협정문(안)은 통합본문(총12장) 및 주석(총9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투자가의 정의 및 대우, 투자보호, 분쟁결정 절차, 금융서비스관
련 조항 등을 들 수 있다.

III. MAI의 效果

1. 肯定的인 效果

1) 해외직접투자의 증대

MAI는 투자자유화, 투자보호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고 정책이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
어 해외투자에 따르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축소시키는 등 법적 보호장치로서의 기능
을 하므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은 물론 해외직접투자의 증대를 초래할 것으로 보
인다.

2) 외국인투자 증대 및 기술이전 촉진

MAI에의 가입은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
하므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 선진
국의 우수한 제도, 전문인력 및 기술이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구조조정 및 경제체질

MAI는 국제투자와 관련한 각 국의 투자제한조치의 철폐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각종 투자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제체질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MAI는 모든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자산거
래, 즉 해외간접투자가 활발해지게 되는데 해외간접투자가 본래의 목표인 높은 수익추

구대신에 경영권 확보나 경영간섭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국가간 M&A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와 같은 M&A의 확대는 우리나라 기업들로 하여금 경영합리화 노력을 강화토록 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 기업을 정리토록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否定的인 效果

1)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시 단기자본을 유발시키는 포트폴리오 투자, 경쟁력이 취약한 금융부문 등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문의 시장을 개방하였으므로 MAI 협상과정에서는 포트폴리오 투자 및 금융, 보험, 통신 등 서비스 부문의 시장개방 요구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MAI의 가입으로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될 경우 경쟁격화로 인해 여타국에 비해 경쟁력 등이 취약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대외불균형의 심화

MAI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전면적인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있어 MAI가입이후 대규모 자본유입이 예상되는데 동 자본이 소비증가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입될 경우 실질환율절상, 경상수지적자 확대 등 대외불균형의 심화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유입자본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국내자본시장의 국제자본시장에로의 통합을 촉진하고 이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 자본비용의 감소 등 자본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와 국내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3)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MAI 가입으로 투자관련 각종규제가 완화될 경우 자본유출입 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통화 및 환율정책 운용에 있어 어려움 가중, 금융자산거래 및 자금이동의 증대 등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4) 경쟁격화 및 구조조정 부담 증대

MAI는 국제투자에 있어 각국의 투자제한조치 철폐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MAI가 발효되면 각종투자관련 규제의 완화 내지 철폐가 불가피하다. 이는 외국기업들의 국내진출 확대를 초래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의 경쟁격화 및 구조조정압력을 가중시키게 된다.

특히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 부문 등에서 자유화가 확대될 경우 국내기업들의

퇴출이 증대될 것이며 경영구조가 취약한 제조업 부문 등에서는 국내기업들이 경영권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IV. MAI體制下의 效率的인 FDI 戰略

'80년대 중반 이후 범세계화 추세에 맞춰 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의 투자규범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 투자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한 다자간 투자협정이다.

MAI 특징은 투자정의에 있어 자산접근방식(asser approach)을 채택하였다.

전통적 의미의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 지적재산권, 계약에 따른 각종 청구권 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거래가 적용이 된다.

법적 구속력 측면에서는 투자자인 기업이 투자상대국의 차별적인 행위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해당국 정부상대로 직접 제소가 가능하다.

MAI 발효 후 세계직접투자 전망은 투자지분 제한, 기술이전 의무, 진입금지, 조세규제, 반덤핑 등 간접적 투자장벽해소, 기업들의 전 세계대상 국제분업상의 이익 최대 활용가능, '80년대 중반이후 세계 직접투자 규모 증가현상 지속 전망, 투자규모의 대형화 및 현지화 급진전 예상,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 유통, 통신 등 서비스분야 투자 본격화 전망, 경기장 운영업, 전매사업, 발전업, 등 독점분야 투자 급진적 예상, 국경간 인수·합병(M&A)에 의한 투자비중 증가가 전망된다.

MAI 체제하에서 우리기업의 FDI활성화 전략으로 정부측면과 기업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 정부측면에서의 전략

MAI 발효이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조정에 대비하여 투명성에 배치되는 정책관행의 개선을 통한 투자체제의 투명화가 긴요하다.

또한 향후 MAI유보리스트 협상결과에 관계없이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자유화 범위 확대 및 일정단축이 필요하다.

WTO 체제의 출범으로 무역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MAI의 발효로 투자자유화가 실행될 경우 정부의 정책운영이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 수립 및 시행상의 전문성 축적이 시급하다.

1. 政府側面에서의 戰略

1)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운용

유입된 외국자본은 투입경로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국가경제의 기초여건과 정부의 정책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MAI 가입에 따른 외국자본 유입 등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물가안정, 재정균형, 환율안정 등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운용이 필수적이다.

2) 국제적 정책협조체제 구축

WTO의 출범으로 임의적인 무역정책 수행이 제한을 받게 되듯이 MAI 의 출범은 국내경제의 필요에 따라 투자자산의 흐름을 제한하는 정책수단의 사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제정책이 상호연관성을 증대시키게 되므로 경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국가간 정책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상호협조체제 구축도 긴요하다.

3) 대개도국 통상외교의 강화

우리나라는 MAI가 발효될 경우 MAI 참여국과 이에 참여하지 못한 개도국간의 통상 마찰에서 중간자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므로 이를 중재할 수 있도록 통상외교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대부분 개도국에 집중되어 있어 개도국의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는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데다 우리나라의 투자자유화 수준도 이들과 유사하므로 개도국과의 통상외교 강화노력이 바람직하다.

4) 국내기업이 세계화기반마련

국내기업의 세계화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므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및 이와 관련되는 조치의 강구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해결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도 긴요하다.

2. 企業側面에서의 戰略

1) 기업자체의 대응능력 제고 노력 강화

MAI 체제하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세계경제를 움직이게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에 맞추어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으로의 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내부의 비효율적인 경영구조 개선, 업종의 전문화 및 이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한 질적 고도화 등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세계 GDP와 총고정자본 형성에서 차지할 해외직접투자의 비중과 대내적으로
「고비용-저효율」 문제 해소 차원에서 우리경제의 제2의도약계기 마련**

- ① 기존의 저렴임금 등 생산요소 가격차 목표 투자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시각에서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달성을 방향으로 전개
- ② 산업구조정책과 연계로 산업공동화 부작용 최소화
- ③ 국내산업의 고도화 기여방향으로 추진
- ④ 해외 자회사와 모기업 간의 기업내 무역 활성화 도모
- ⑤ 수출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직접투자 추진

해외직접투자와 수출간의 상관관계

구분	섬유·의복	석유화학	1차 금속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제조업
한국(95~2001년)	0.68	0.27	0.39	0.41	0.32
일본(98~2001년)	0.62	0.36	0.17	0.21	0.33

주 : 1) 두 변수 모두 뚜렷한 양(+)이 시간추세 (time trend)를 지니고 있으므로
식①과 식②에 의하여 시간추세(detrending)를 제거한 변수,

즉, $\text{残差}(U_t \text{와 } V_t)$ 를 이용하여 양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ln(FDI_t) = a + b t + U_t \quad ①$$

$$\ln(X_t) = a + \beta t + V_t \quad ②$$

단, FDI_t : 제조업 해외직접 투자 잔액 X_t : 공산품 수출

a, b, a, β : 추정계수 U_t, V_t : 잔차 \ln : 자연대수

2) 일본의 경우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것을 이용함

3) 해외직접투자는 독점적 경쟁우위요소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전략

- ① R&D투자재고, 기술인력 확보, 현지특성에 맞는 제품개발, 유통망 확충 등의 독점적 경쟁우위요소 확보
- ② 시장선점 차원에서 투자지역의 선택과 철저한 투자분석, 기업간 협력 추진 필요

4) 투자환경 상이에 따른 투자마찰 극복과 현지정착을 위해 현지 진출기업의 현지화와 통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① 현지화·통합화와 기업활동 세계화의 적응을 위해 외국문화의 지역연구 강화
- ② 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 언어 등에 대한 교육의 보편화 필요

우리기업의 현지경영의 예로요인

(%)

구분		합계	낮은 생산성	불량률 이높고 품질이 불안정	노사 분쟁	높은 인건비 상승	이직률 이높고 정착률 이낮음	지각 결근	종업원의 낮은지적 수준	현지종업 원과의 의사소통 곤란	기타	무 응 답
구 미	미국	100.0	10.6	-	-	13.6	37.6	6.1	12.1	34.8	7.6	19.7
	영국	100.0	16.7	-	-	16.7	36.7	16.7	16.7	26.7	6.7	13.3
	캐나다	100.0	11.1	-	11.1	-	22.2	-	-	22.2	11.1	33.3
	소계	100.0	12.4	-	1.0	13.3	362	12.4	12.4	31.4	7.6	19.0
아 시 아	인니	100.0	25.0	25.0	-	75.0	50.0	25.0	25.0	75.0	-	-
	태국	100.0	23.1	15.4	-	38.5	46.2	38.5	38.5	46.2	23.1	-
	싱가폴	100.0	-	-	-	50.0	62.5	12.5	25.0	25.0	25.0	-
	말련	100.0	29.4	17.3	-	52.9	765	41.2	41.2	17.6	-	5.9
	소계	100.0	21.4	14.3	-	50.0	61.9	35.7	35.7	33.3	11.9	2.4
합계 (업체수)		100.0	15.0	4.1	0.7	23.8	43.5	19.0	19.0	32.0	8.8	14.3
		(147)	(22)	(6)	(1)	(35)	(64)	(28)	(28)	(47)	(13)	(21)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해외진출 한국기업이 인사노무관리 실태와 과제. '2002년 11월'

5) 초기 100% 단독투자를 지양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소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국제경영 능력 향상 후 단독투자 추진

① 중국이나 ASEAN내 현지 시장을 겨냥한 철강, 화학등 기간산업과 현지 자원 활용투자의 경우 합작투자 바람직하다.

② 제 3국 우회수출기지 확보와 기술유출 방지 필요 산업의 경우 단독진출 유리하다.

③ 국내 중소기업간 컨소시움 형태의 공동투자나 국내 종합상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진출 시도 방안 고려하여야 한다.

④ NAFTA, AFTA등으로 현지부품 의무조달 비율을 설정중인 북미, 동남아 지역에 대한 완성품업체와 부품업체의 연계투자 바람직하다.

6) 특정지역 편중에 따른 현지국과 투자마찰과 국내기업간 과다경쟁 방지를 위해 투자지역 다변화가 필요하다.

- ① ASEAN, 중남미 집중 노동집약적 업종과 단순 부품조립 업종의 서남아시아, 베트남,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 ② 시장잠재력이 높고 투자의 적절 시기를 놓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상의 혜택이 지원된다.
- ③ 중국, 베트남, 서남아 지역 투자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확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별 투자전략 및 업종

지역별	투자전략	투자유망업종	비고
ASEAN, 중국, 중남미	투자이점이 상실되고 있는 섬유류, 신발, 전자업종에서 자본집약적 업종으로 확대 필요	수송기계, 석유화학, 철강 등 자본집약산업	
미국, 캐나다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M&A나 합작투자 중점추진	컴퓨터, 신소재 등 첨단 기술분야	
멕시코	노동집약적 제품의 북미시장 확보와 중남미 진출의 생산거점 확보차원 추진	신발, 섬유류, 전자업종 등 노동집약산업	

3. 海外直接投資의 特徵 및 展望

최근의 전세계 해외직접투자의 몇가지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⁶⁾

첫째, 국제생산의 규모와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세계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해외생산이 지속적인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조치에 따라서 더욱 증대되고 또 훨씬 더 용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미국이 최대의 해외직접투자국이자 해외직접투자의 수입국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개발도상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전세계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기를 맞이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증권투자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직접투자의 앞으로의 전망은 전세계의 해외직접투자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6)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7: Transnaional Corporations, Market Structure and Competition Policy(New York Geneva, UN,1997).

것인가를 다국적기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첫째, 전체 제품판매 중에서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전체 생산에서 해외생산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기업의 국제화의 수단으로서 합병, 인수, 제휴, 그리고 합자투자가 훨씬 더 많이 이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넷째,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시장에 대한 접근이 투자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섯째, 기업의 모든 기능들은 비록 각기 다른 수준에서 시작하게 되지만, 훨씬 더 많은 수준의 국제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곱째,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기는 하겠지만 국제화의 범위와 해외직접투자의 규모는 여전히 기업의 규모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덟째, 산업별로의 볼 때 경제 하부구조, 유통, 비금융서비스, 그리고 자동차부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급증하고 금융서비스와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크게 증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V. 結 論

MAI협정은 기존의 어느 투자규범보다도 포괄적이고 강력한 최신의 투자관련 규범으로서 우리기업에게도 외국시장의 개방으로 많은 투자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와 함께 우리기업의 FDI증가 추세에서 WTO차원에서의 포괄적인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는 우리기업의 FDI에 대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MAI 및 WTO의 투자논의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MAI 시대하에서 우리기업의 FDI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측면에서의 전략은 ① 정책의 투명성, ②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③ 국제적 정책협조체계 구축, ④ 대개도국 통상외교 강화, ⑤ 국내기업의 세계화 기초마련

7)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7: Transnaional Corporations, Market Structure and Competition Policy(New York Geneva, UN,1997).

기업의 측면에서의 전략은 ① 기업자체의 대응능력 제고 노력, ② 고비용-저효율 문제해소, ③ 독점적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공격적 투자전략, ④ 기업의 현지화와 통합화 노력, ⑤ 국제경영능력 향상, ⑥ 투자지역 다변화 필요, ⑦ 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추진, ⑧ 현지기업의 M&A 및 정치적 위험에 대비, ⑨ Marketing 투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 FDI 전략은 새로운 국제경영의 사고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영마인드 변화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蔡点吉, 現代經營의 理解, 圖書出版 泰一社, 2002.
蔡点吉, 國際通商流通의 實際, 三光出版社, 1999.
蔡点吉, 國際經營論, 三光社, 1994.
蔡点吉, 國際通商經營論, 三光社, 1997.
魚尤人, 方烈,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方案에 관한 實證的 研究, 高麗大學校經濟系의 제26輯
李元映, 經濟發 海外直接投資政策-海外投資 活性化 方案, 韓國輸出入銀行 1987. 5.
鄭求鉉, 中小企業의 海外投資, 海外投資情報, 中小企業振興工團, 1987. 7.
趙東成,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國際化, 企銀調查月報 24卷 3號. 1986. 3.
池龍熙, 우리나라企業의 海外投資事業實態 및 支援方案, 西江大學校, 經常論 第11輯
우리나라의 海外投資動向, 주간내외경향 1309호, 1987. 2. 14.
國際收支 黑字轉換期의 海外投資 活性化 政策, 주간내외경제 1312號, 1987. 3.
俞萬善, “韓國家電產業의 對先進國 直接投資戰略 方案”, 韓國人力開發本部
元鐘根, “國際經營論考”, 螢雲出版社, 1988.
韓國輸出入銀行, Country Risk 評價
商工部, 電子·電氣工業便覽 1989.
全龍昱, “韓國企業의 新海外投資戰略方向”, Mineograph, 1988.
全龍昱, “海外投資成功要因分析과 韓國企業의 新海外投資戰略”, 韓國人才開發本部. 1989.5.
關口未夫, 海外投資の 新展開, 東京 : 日本經濟新聞社, 1979.
鳥田克美, 海外直接投資入門, 東京 : 學文社, 1983.
瀧澤著太郎 中小企業の 海外進出, 東京 : 有斐閣 1982.
日本貿易振興會 世界と 日本の 海外直接投資, 1987.
佐久本常人, 經營國際化的 論理,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83.
Kojima, Direct Foreign Investment : a Japanese Model of Multinational Business Operations,
London : Croo Helm, 1978
Ozawa, "International Structure : New Theoretical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Experience"
Oxford Economic Papers Vol. 31, March, 1979.
Well, Louis 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Firm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Multinationalization form Small Countries Trimir Agmon and Kindleberger, Cambridge
Mass. : M. I. T. Press.
Dunning, J. H.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 Bradley, D. G., "Managing Against Expropriation", Harvard VusinessReciew, July/ August, 1977,
- Giddy, I., and Young, S. : Couventional Theories and Unconventional Multionals in M. Rugman, Newtheories of Multiontional Enterprises, Canberra: Groom Helum, 1982
- Hoskins, W. R., "How to encounter Expropri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Sept/Oct.1970.
- Rlbock, s., "Political Risk: Indenfication and Assetment."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 Jun Uong Wook, "The Reverse Direct Invertment: The Case fo the Korean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Autom , 1987
- Root, E, R, "Analyzing Political Risk In International Business", Nationalism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1972
- Rummel, R, and Heener, D., "How Multinationals Analyze Political Risk". Harvard Business Reciew, Jan./ Feb., 1978.
- Kojima, Direct Foreign Investment : Japanese Model of Multinational Business Operation, New York". Praeger. Puvlisher,1978.
- Ken-Ich Imai, "Japanese Corporate Stratiefies, Towards International NetWrking and Prlduct development, A Paper Presented at the Japanese Corporate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Adjustment Conference, Canberra, Australia, Sept.1988.